

건축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건축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건축위원회의 결정과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학교 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장기 캠퍼스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외부단체의 시설관련 기부제안 심의
3. 신축건물의 건축규모(건평, 층수, 형태), 부지 선정, 설계 및 외관 등 심의
4. 기타, 캠퍼스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기획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를 포함하여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해당 건축물 관련 기관장의 위원 임기는 당해 시설물 준공시까지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전문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와 회의록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